

---

# 『미국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 재고』 심층분석 보고서

---

2025. 10.

TBT 통보 여부	통보	HS Code	28, 29, 3827
통보국	미국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2,907,987
작성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 [ 목 차 ]

1. 규제 개요 .....	1
2. 개정 세부내용 .....	2
3. 관련 법령 및 표준 .....	9
불임. 규제 참고자료 .....	10

## 1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CAA)」 제114조 및 제136조에 근거하여, 기존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reenhouse Gas Reporting Program, GHGRP)의 효율성과 법적 필요성을 재검토한 결과, 불필요한 보고 의무를 축소하여 산업계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보고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규제 대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제안함
- (규제요지) EPA는 본 개정안을 통해 40 CFR Part 98\* 전반을 수정하고, 석유·천연가스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 및 공급자 카테고리의 보고 의무를 폐지하여 온실가스 보고 체계 전반의 축소와 중단을 주요 목적으로 함

\* Title 40 - Protection of Environment, Part 98 - Mandatory Greenhouse Gas Reporting

TBT 통보번호	▪ USA/2239	통보일 고시일	▪ 2025년 9월 17일 ▪ 2025년 9월 16일
규제명	▪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 재고(28페이지, 영어) ▪ Reconsideration of the Greenhouse Gas Reporting Program		
규제부처	▪ 환경보호청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요구사항 유형	▪ 온실가스 보고·기록·정보제출 의무의 삭제 및 유예 준수		
제·개정 상태	▪ 개정 초안		
채택일	▪ 추후 결정		
의견수렴 마감일	▪ 2025년 11월 3일		
발효일	▪ 추후 결정		
준수기한	▪ -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 온실가스 ▪ Greenhouse Gas	
적용범위	▪ 본문 2페이지 참고	
對 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	▪ 2,907,987	HS Code ▪ 28, 29, 3827

## 2

## 개정 세부내용

## □ (개정 세부내용)

- (적용범위) 동 개정안은 기존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 40 CFR Part 98)」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또는 공급 실적의 보고 의무를 지녔던 모든 시설, 공급자 및 탄소 저장 부문을 포함함
  - 동 개정안은 기존 GHGRP 전 산업 부문에 걸친 보고 의무를 대폭 축소 및 삭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정 이후에는 석유·가스 시스템만이 예외적으로 2034년 이후 한정적으로 유지되고, 그 외 모든 부문은 보고 의무가 전면 중단됨
- ① 직접배출 시설은 전력, 제조, 금속, 시멘트, 폐기물 매립 등 주요 산업 소스 카테고리를 포함하며,
- ② 공급자는 석유제품, 천연가스, HFC 및 HCFC 냉매 등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연료 및 화학물질을 생산·수입·공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 ③ 탄소 지중저장 부문은 Subparts RR, UU, VV 등에 해당하는 CO<sub>2</sub> 포집·주입·저장 활동을 포함하고,
- ④ 석유 및 천연가스 시스템(Subpart W) 중에서는 생산·가공·수송 부문만 유지되며, 천연가스 배관망 세그먼트는 영구적으로 제외됨
  - 이에 따라, 기존 GHGRP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던 대부분의 시설 및 공급자가 2024년 이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에는 EPA의 공기·복사국 (Office of Air and Radiation, OAR)이 관할하는 Subpart W 부문만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로 전환됨

[표 1] 규제 대상 공급자

범주	북미산업 분류 시스템 (NAICS)	40 CFR 제98부가 적용될 수 있는 시설의 예:
일반 고정식 연료 연소 배출원		보일러, 공정 히터, 소각로, 터빈 및 내연기관을 운영하는 시설.
	211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체.
	321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체.
	322	펄프 및 제지 공장.
	325	화학제품 제조업체.
	324	석유정제시설 및 석탄 제품 제조업체.
	316, 326, 339	고무 및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331	제철소, 용광로.
	332	전기도금, 도금, 연마, 양극산화 및 착색.
	336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제조업체.

범주	북미산업 분류 시스템 (NAICS)	40 CFR 제98부가 적용될 수 있는 시설의 예:
	221	전기, 가스 및 위생 서비스.
	622	보건 서비스.
	611	교육 서비스.
전력 생산	2211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시설.
아디프산 생산	325199	기타 모든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 아디프산 제조
알루미늄 생산	331313	1차 알루미늄 생산시설.
암모니아 제조	325311	무수 암모니아 제조시설.
탄화칼슘 생산	325180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 탄화칼슘 제조.
이산화탄소 주입으로 증진된 석유 회수 프로젝트	211120	이산화탄소 주입 석유 회수를 이용한 석유 및 가스 추출 프로젝트.
카프로락탐, 글리옥실, 글리옥실산 생산	325199	기타 모든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
시멘트 생산	327310	시멘트 제조.
세라믹 제조	327110	도자기, 세라믹 및 배관 설비 제조.
	327120	점토 건축 자재 및 내화물 제조.
코크스 소성	299901	코크스; 코크스, 석유; 코크스, 소성 석유.
전자제품 제조	334111	マイ크로컴퓨터 제조시설.
	334413	반도체, 태양광발전(PV)(고체상) 장치 제조시설.
	334419	액정 디스플레이(LCD) 유닛 스크린 제조시설;
		マイ크로 전기기계시스템(MEMS) 제조시설.
전기장비 제조 또는 개조	33531	송배전 개폐기 및 특수 변압기 제조시설.
40 CFR 제75부를 통해 보고 하는 발전시설	221112	발전, 화석 연료(예: 석탄, 석유, 가스).
전기장비 사용	221121	대용량 전력 송전 및 제어 시설.
송배전 장비 제조 또는 개조	33361	엔진, 터빈 및 송전 장비 제조.
합금철 생산	331110	합금철 제조.
불화 온실가스 생산	325120	산업용 가스 제조시설.
지중 격리	NA	CO2 지중격리시설.
유리 생산	327211	평판 유리 제조시설.
	327213	유리 용기 제조시설.
	327212	기타 압착유리, 분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수소염화불화탄소(HCFC)-22 생산	325120	산업용 가스 제조: HCFC 가스 제조.
HCFC-22 생산시설과 동일한 부지에 위치하지 않으며 연간 214 미터톤을 초과하는 수소화불화탄소(HFC)-23을 파괴하는 HFC-23 파괴 공정	325120	산업용 가스 제조: HFC 가스 제조.
수소 생산	325120	수소 제조시설.

범주	북미산업 분류 시스템 (NAICS)	40 CFR 제98부가 적용될 수 있는 시설의 예:
산업폐기물 매립지	562212	고형폐기물 매립지.
산업폐기물 처리	221310	수처리시설.
이산화탄소 주입	211	석유와 가스 채굴.
철강 생산	333110	종합 제철소, 철강 회사, 소결 공장, 용광로, 기본산소전로(BOPF) 시설.
납 생산	331	1차 금속 제조.
석회 제조	327410	석회 생산.
마그네슘 생산	331410	비철 금속(알루미늄 제외) 제련 및 정련: 1차 마그네슘 정련.
질산 생산	325311	질소 비료 제조: 질산 제조.
석유 및 천연가스 시스템	486210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수송.
	221210	천연가스 배분시설.
	211120	원유 추출.
	211130	천연가스 추출.
석유화학 생산	324110	석유정제소에서 생산된 석유화학제품.
석유정제시설	324110	석유정제시설.
인산 생산	325312	인산 비료 제조.
펄프 및 제지 제조	322110	펄프 공장.
	322120	제지 공장.
	322130	판지 공장.
다른 곳에 포함된 시설		
다양한 탄산염 용도	562212	고형폐기물 매립지.
도시고형폐기물	매립지	하수처리시설.
	327910	탄화규소 연마재 제조.
탄화규소 생산	325180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 소다회 제조.
소다회 생산	325120	산업용 가스 제조시설.
이산화탄소 공급업체	325120	산업용 온실가스 제조시설.
산업용 온실가스 공급업체	211130	광산 현장의 석탄 액화.
석탄 기반 액체 연료 공급업체	221210	천연가스 배분시설.
	211112	천연가스 액체 추출시설.
천연가스 및 천연가스 액체 공급업체	324110	석유정제시설.
석유제품 공급업체	325180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 이산화티타늄 제조.
이산화티타늄 생산	212115	지하 석탄 채굴.
지하 탄광	331410	비철금속(알루미늄 제외) 제련 및 정련 1차 아연 정련
아연 생산	423730	에어컨 장비(실내 유닛 제외) 도매업체.
사전 충전 장비 및 폐쇄형 셀		
폼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333415	에어컨 장비(자동차 제외) 제조.

범주	북미산업 분류 시스템 (NAICS)	40 CFR 제98부가 적용될 수 있는 시설의 예:
	423620	에어컨, 실내, 도매업체.
	449210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소매업체.
	326150	폴리우레탄 품 제품 제조.
	335313	회로 차단기, 전원, 제조.
	423610	회로 차단기 및 관련 장비 도매업체.

- (세부 개정 사항) 동 개정안은 기존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 40 CFR Part 98)」의 조문과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며, 적용 조항 삭제, 정의 수정, 보고·보관 의무 해제, 불필요 규정 폐지 등을 포함함
  - 47개 산업 부문 중, 석유·가스 시스템(Subpart W)을 제외한 모든 산업 부문의 보고 의무를 삭제함

[표 2] 동 개정안(석유·가스 시스템)

3. 하위부 W – 석유와 천연가스 시스템
<p>하위부 W는 10개의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하위부문, 즉 육상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해상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육상 천연가스 처리, 육상 천연가스 전송 압축, 육상 석유와 천연가스 수집 및 승압, 육상 천연가스 전송 파이프라인, 지하 천연가스 저장, LNG 저장, LNG 수출입 장비, 천연가스 배분을 다룬다.</p> <p>2024년 5월 최종 규칙에서 EPA는 하위부 W에 따른 배출량 보고가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CAA 섹션 136(h)의 지시에 따라 향후 CAA 섹션 136을 시행할 때 요금이 부과되는 범위를 입증하기 위해 소유자 및 운영자가 적절한 경험적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또한 2024년 5월 최종 규칙은 CAA 섹션 136(h)의 지시에 따라 하위부 W가 적용 대상 시설의 총 메탄 배출량을 반영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배출원 추가를 확정했으며, 데이터 검증 및 투명성 개선을 위한 개정사항을 확정했다. 2022년, CAA의 섹션 136은 메탄 배출 감축 프로그램을 수립했으며, EPA가 하위부 W에 따라 보고된 석유와 천연가스 시스템 부문의 2024년 배출량 데이터를 시작으로 폐기물 배출 요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요구한다. 2025년 7월 4일, 의회는 폐기물 배출 요금이 부과·징수되는 기간이 2034년 이후 배출량 보고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하기 위해 CAA의 섹션 136(g)를 개정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개정은 2034년까지 모든 하위부 W 산업 하위부문(CAA의 섹션 136이 적용되지 않는 천연가스 배분 산업 제외)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제거한다.</p> <p>또한 본 조치에서 EPA는 CAA의 섹션 136에 따라 요구되거나 필요하지 않은 하위부 W에서 천연가스 배분 산업 하위부문에 대한 GHGRP 요구사항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EPA는 하위부 W에서 천연가스 배분 산업 하위부문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개정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된 개정사항에는 40 CFR 98.230(a)(8)에 규정된 천연가스 배분 산업 하위부문 정의, 40 CFR 98.231(a)(2)에 규정된 천연가스 배분 산업 하위부문별 보고 기준값, 40 CFR 98.232(i)에 규정된 천연가스 배분 시설이 현재 배출량을 계산하고 보고하는 배출원 목록 및 40 CFR 98.238에 규정된 "이 하위부에 따른 보고 목적 및 해당하는 하위부 A 요구사항을</p>

위한 천연가스 배분 관련 시설” 정의를 제거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EPA는 40 CFR 98.233에 규정된 계산 방법 요구사항 및 장비 누출, 고정식 연료 연소 배출원, 기타 대규모 방출 사건, 블로우다운 벤트 스택, 천연가스 공압장치 배출 및 크랭크케이스 벤트를 비롯하여 40 CFR 98.232(i)에 열거된 배출원에 대한 40 CFR 98.236의 보고 요구사항에서 필요에 따라 천연가스 배분 산업 하위부문에 대한 참조를 제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도 EPA는 제98부의 표 W - 1, W - 5 및 W - 6에서 천연가스 배분 산업 하위부문에 대한 참조 및 이 산업 하위부문에 대한 배출계수를 제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EPA는 이러한 배출계수가 적용되는 산업 하위부문을 글머리 기호가 붙은 목록이 아닌 쉼표로 분리된 목록으로 표시하기 위해 표 W-1의 처음 세 가지 배출계수 세트의 형식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영향을 받는 산업 하위부문의 보고자를 위해 표의 명확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전문의 섹션 II.A에 설명된 이유로, EPA는 전문의 섹션 II.B.1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하위부 W에 따라 석유와 천연가스 시설이 보고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중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EPA는 석유와 천연가스 시스템 배출원 범주에 대한 데이터가 여러 정부 기관에서 해당 규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재무부와 IRS는 IRC의 섹션 45V 청정 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에 따른 최종 규정 전문에서 하위부 W 규정을 참조한다(90 FR 2224, 2025년 1월 10일). EPA는 하위부 W에 따라 보고된 데이터의 이러한 사용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목적 및 이러한 GHGRP 데이터 사용은 전문의 섹션 II.A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CAA 섹션 114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즉, EPA의 CAA 조항 이행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EPA는 보고연도 2034년까지 하위부 W에 따른 보고중지 제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 (적용 조항 및 정의 삭제) EPA는 시설 및 공급자 적용 기준을 삭제하고, 보고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었던 연간 25,000 톤 CO<sub>2</sub> e 배출 임계치를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급자 카테고리 목록 및 관련 정의 조항이 제거되어 석탄·석유·천연가스·냉매 등 공급망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공급자 보고 체계가 완전히 해체됨
- (보고·보관 의무의 중단) EPA는 2024 보고연도까지 제출된 자료에 한해 기존의 기록·보관 의무를 유지하되, 2025년 이후부터는 보고 및 수정 의무를 전면 중단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전자 보고 시스템(Electronic Greenhouse Gas Reporting Tool, e-GGRT)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수정·재제출 기능도 폐지되며, EPA는 보고 자료의 관리 책임을 시설 단위에서 면제함
- (폐기물 및 지중저장 관련 조항 폐지) 폐기물 매립은 2024년 개정 당시 가스 수거 효율 하향 조정 이후 전국폐기물 재활용협회의 재심 청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보고 의무를 삭제하면서도 수거 효율값 조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병행 수렴하고 있으며, CO<sub>2</sub> 포집 및 지중저장(Subparts RR, UU, VV) 부문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제13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보고 조항이 전면 폐지됨

### [표 3] 동 개정안(도시고형 폐기물 매립지)

#### 4. 하위부 HH– 도시고형폐기물 매립지

2024년 4월 최종 규칙에서 EPA는 매립지의 표면 배출량 모니터링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가스 포집 시스템을 갖춘 모든 보고 대상 도시고형폐기물(MSW) 매립지에 대한 매립지 가스 포집 효율을 10 %p 낮추는 제98부 하위부 HH(도시고형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개정사항을 확정했다. 이 최종 조치는 2023년 5월 규칙안(88 FR 32852, 2023년 5월 22일)에 대해 접수된 의견 및 가스 포집 시스템을 갖춘 매립지에 대한 최근 배출량 측정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EPA는 2024년 6월 24일 국가폐기물재활용협회(NWRA)로부터 매립지 기본 포집 효율값을 낮추기로 한 EPA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행정 청원을 접수했다. NWRA는 "매립지의 [표면 배출량 모니터링]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매립지에 대한 기존 포집 효율을 낮추기로 한 EPA의 최종 결정에 대해 대중에게 적절한 통지가 제공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원래 제안의 "논리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주장을 근거로 포집 효율값에 대한 최종 개정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NWRA는 낮아진 최종 포집 효율값이 부문 전체의 배출량을 과대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EPA가 최종값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2024년 8월 8일, EPA는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승인한다는 답변서를 NWRA에 제공했다. NWRA의 재검토 청원 및 EPA의 답변서는 본 규칙제정 Docket(Docket) 식별 번호: EPA - HQ - OAR - 2025 - 018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PA는 전문의 섹션 II.A에 설명된 이유로 하위부 HH의 보고 요구사항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EPA는 재검토 청원 의무에 대응하고 충족하기 위해 포집 효율 기본값에 대한 의견도 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EPA가 하위부 HH에 따른 모든 보고를 제거하기 위해 제안된 변경사항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가스 포집 시스템을 갖춘 모든 대상 매립지에 대해 하위부 HH에서 사용된 포집 효율값이 2024년 4월 최종 규칙 이전에 원래 사용된 값(즉, 일일 덮개가 있는 지역의 경우 60 %, 중간 덮개가 있는 지역의 경우 75 %, 최종 덮개가 있는 지역의 경우 95 %)으로 되돌려야 하는지 여부, 2024년 4월 최종 규칙에서 확정된 포집 효율값(즉, 일일 덮개의 경우 50 %, 중간 덮개의 경우 65 %, 최종 덮개의 경우 85 %)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본 규칙제정 Docket(Docket) 식별 번호: EPA - HQ - OAR - 2025 - 0186)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출판된 문현과 가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포집 효율값을 추가로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 5. 하위부 PP– 이산화탄소 공급자, RR– 이산화탄소의 지중 격리, UU– 이산화탄소 주입 및 VV– ISO 27916을 사용한 석유 회수 증진이 수반되는 이산화탄소 지중 격리

GHGRP는 탄소 포집 및 격리(CCS)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4개의 하위부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하위부 PP(이산화탄소 공급자), 하위부 RR(이산화탄소의 지중 격리), 하위부 UU(이산화탄소 주입) 및 하위부 VV(ISO 27916을 사용한 석유 회수 증진이 수반되는 이산화탄소 지중 격리)가 포함된다. 전문의 섹션 II.A에 설명된 이유로, EPA는 이러한 하위부에 따른 보고자 요구사항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위부 PP(이산화탄소 공급자)는 상업적 용도 또는 지하 주입을 위해 CO<sub>2</sub> 를 공급할 목적으로 생산장에서 CO<sub>2</sub> 를 포집 및/또는 생산하는 시설을 다룬다. 또한 벌크 CO<sub>2</sub> 수입업체 및 수출

업체도 다룬다. 하위부 RR(이산화탄소 지중 격리)은 지하 지질 형성체에 장기 격리하기 위해 CO<sub>2</sub> 스트림을 주입하는 정(井) 또는 정 그룹을 다룬다. 원유 회수 향상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시설은 하위부 UU 또는 하위부 VV에 따라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며, EPA에 승인을 위해 하위부 RR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계획을 제출하여 하위부 UU 또는 VV 대신 하위부 RR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하위부 UU(이산화탄소 주입)는 지하로 CO<sub>2</sub> 스트림을 주입하는 정 또는 정 그룹을 다룬다. 여기에는 정이 하위부 RR에 따라 데이터를 보고하기로 선택한 시설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 석유 및 가스 회수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모든 정이 포함된다. 2024년 4월 최종 규칙에서 확정된 하위부 VV는 지중 격리를 정량화하는 수단으로 CSA 그룹 (CSA)/미국표준협회(ANSI) ISO 27916:2019, 이산화탄소 포집, 전송 및 지중 저장 – 석유 회수 증진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장(CO<sub>2</sub> -EOR)이란 제목의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을 사용하는 시설에 적용한다. 하위부 VV는 하위부 RR에 따라 보고하기로 선택한 EOR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PA는 특정 배출원 범주에 대한 데이터가 여러 정부 기관에서 해당 규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무부와 IRS는 내국세법의 섹션 45Q에 따라 탄소산화물 격리에 대한 납세자 세액 공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러한 규정 및 재무부 결정의 관련 전문 논의는 GHGRP에 따른 요구사항을 언급한다. 또한 재무부와 IRS는 제98부 하위부 PP(이산화탄소 공급자)에 따라 보고된 데이터가 탄소 포집량을 입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EPA는 이러한 GHGRP 사용을 인정하지만, 전문의 섹션 II.A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GHGRP 사용이 CAA의 섹션 114에 따라 ICR을 승인하는 CAA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EPA의 CAA 조항 이행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EPA는 하위부 PP(이산화탄소 공급자), 하위부 RR(이산화탄소의 지중 격리), 하위부 UU(이산화탄소 주입) 및 하위부 VV(ISO 27916을 사용한 석유 회수 증진이 수반되는 이산화탄소 지중 격리)를 비롯하여 탄소 포집 및 격리와 관련된 모든 배출원 범주를 제거하는 제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 3

### 관련 법령 및 표준

#### □ (관련 법령)

- EPA의 배출원 점검·모니터링·정보수집 권한 규정<sup>1)</sup>
- 온실가스 배출·공급자 보고 프로그램 규정<sup>2)</sup>
- 석유·가스 시스템 메탄배출 부담금 및 보고 체계의 법적 근거<sup>3)</sup>

---

1) <https://www.epa.gov/clean-air-act-overview/clean-air-act-text?utm>

2) <https://www.ecfr.gov/current/title-40/chapter-I/subchapter-C/part-98?utm>

3)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42/7436?utm>

(규제원문 출처)

- ePing SPS&TBT Platform
- 원문링크: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USA/25\\_06094\\_00\\_e.pd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USA/25_06094_00_e.pdf)